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93
----------	------

발의연월일 : 2024. 12. 20.

발의자 : 박용갑 · 한준호 · 정준호  
복기왕 · 조승래 · 박정현  
장철민 · 조인철 · 황명선  
황정아 · 한민수 · 박희승  
황희 · 손명수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 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사태가 직후인 지난 12월 3일부터 동월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으로 조사됨.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모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식업, 행사 대행업, 숙박업 등의 업종 매

출이 급감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서도 지불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전통시장사용분”을 각각 “전통시장등사용분”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50
  -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  
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 3. (생략)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

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

2. · 3. (현행과 같음)  
4. -----  
-----  
-----전통시장등사용분-----

